

「영등포구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에
대한 승인(안)」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 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새주소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정에
대한 승인(안)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- 본 안은 일부 불합리한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하여 지적법제16조·
대통령령 제17488호 「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」· 행정
자치부 예규 제1067호 「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업무처리 요령」· 영등포
구지명위원회조례에 의거 주민의견수렴과 서울시 협의·조정, 한글학회와
한국땅이름학회의 자문, 영등포구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히 결정
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다만, 새주소사업이 1998. 8월부터 추진되어 2002. 12월에 완료되었
으나 2년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주민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
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
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0. 17

보 고 자 : 김 찬 재